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7회 임시회(2022. 9. 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2-65
----------	-------

2022. 9. 1.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
- 나. 제 출 일 : 2022. 8. 19.
- 다. 회 부 일 : 2022. 8. 22.

2. 제출이유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들의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화에 따라 교육을 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 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됨.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사무
-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1) 추진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 2) 추진 필요성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은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바, 전문적인 교육 기관이 필요함

- 광고디자인, 생활과학, 옥외광고 관련 법규, 설계 및 시공 등의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난 강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교육 사무를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종 류	교육시간 (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비고
신규교육	6시간	- 관계법규 - 표시에 관한 사항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필요시 종업원도 실시	- 신규 교육비 : 50,000원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 관계법규	-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 보수 교육비 : 30,000원 (옥외광고사업자가 협회에 교육비 지급)
보수교육	3시간	- 관계법규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필요시 종업원도 실시	

라. 위탁기간 : 2022. 8. 1. ~ 2025. 7.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법 : 수의 협약

바. 소요예산 : 비예산(옥외광고사업자의 교육비 부담분)

4. 검토의견

가. 제출 배경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안전 점검 업무 위탁받은 자의 의무적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위탁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2022. 7.31.자로 만료되었으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옥외광고물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대하여 교육사업의 시설기준 및 자격 등을 구비한 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은 교육의 경제성·전문성과 교육의 질적 관리의 용이성을 고려

하였을 때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 사료됨.

- 다만, 2004년 최초 민간위탁을 “(사)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와 협약하고 계약한 이후로 구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104조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5조 제1항에서는 민간위탁의 지속 및 재계약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의 없이 지난 2022년 7월 21일 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 결정을 제어하고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는 등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효율성, 수탁자 선정 등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법령의 입법목적을 저해하고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됨.
- 따라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경위와 의회 동의 절차 미이행 사유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

1) 지방자치법 제104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 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교육의 위탁 등)

-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이 교육을 위탁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성과평가)

-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